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
- 나. 규칙으로 일부 규정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목적 및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4조)
- 다. 기금운용 회계관직 명칭 등 변경(안 제5조)
- “기금운용관”을 “기금재무관”으로 변경
 - 기금재무관을 기금업무 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 라.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등),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0조, 제11조)
- 마.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미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④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의원 1명
2. 기금업무 담당국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의회의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실시, 장소 및 회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의회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 ⑧ 생략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 ⑪ 생략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
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 라. 생략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
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
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
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 나. 생략
6. 식품보존업
가. ~ 나. 생략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 나.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 바. 생략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

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
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
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
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
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
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 상환액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4조제1항제5호)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 사업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4조제1항제9호)
- 식품진흥기금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보상금 상환액 지원 외 2건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우며 일반예산으로 3년간 평균 2,200천원 지출(2015년 962천원/ 2016년 3,448천원/ 2017년 현재 2,428천원 지출)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 사업 지원
 -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비 90,000원×100개소=9,000천원 소요 예상
- 식품진흥기금위원 수당 : 70,000원×3명×3회= 630천원

4. 작성자

- 위생과 위생정책계 오정민 (054-480-5493)

소관 실 · 과		위 생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수 연
	담 당	이 동 상
	담 당 자	오 정 민 (480-5493)